

#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19. 3. 26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3월 14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9. 3. 2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마을자치센터의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: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사무

-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마을 공동체 분야 사무

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-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-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상담·홍보
-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- 마을공동체 공모사업
-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주민자치 분야 사무

-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
-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
-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
-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
-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
-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○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2019. 3월: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
- 2019. 4월: 일상감사 의뢰
- 2019. 4월 ~ 5월: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
- 2019. 5월: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019. 5월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

○ 소요예산(2019년 기준): 금406,777천원(시비)

(단위:천원)

분야	소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마을	181,655	92,347	21,843	67,465	6월~12월
자치	225,122	167,703	4,084	53,335	
<b>계</b>	<b>406,777</b>	<b>260,050</b>	<b>25,927</b>	<b>120,800</b>	

○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원센터 설치), 제24조(관리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안건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에 따라,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하여,
- 현행 단체형 마을생태계사업단과 신설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마을과 주민자치회가 혼합된 ‘민간위탁형 마을자치센터’로 운영하려는 것으로,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사업능력, 재정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9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3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민간위탁 목적

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,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위탁 하고자 함.

## 2. 민간위탁 내용

- 민간위탁 대상사무: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사무
  -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-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
    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    -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    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    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    -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상담·홍보
    -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    - 마을공동체 공모사업
    -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주민자치 분야
    -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
    -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  -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
    -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
    -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

-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
-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 3. 민간위탁 추진 일정

- 2019. 3월: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
- 2019. 4월: 일상감사 의뢰
- 2019. 4월 ~ 5월: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
- 2019. 5월: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019. 5월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

### 4. 민간위탁 소요 예산(2019년 기준안): 406,777천원

분야	소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마을	181,655천원 (시비)	92,347	21,843	67,465	6월~12월
자치	225,122천원 (시비)	167,703	4,084	53,335	

### 5.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
: 동일 기관에서 마을·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
-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시 서울시 예산지원(조건부)

<p>▶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간위탁형 : 성동구, 성북구, 도봉구, 금천구, 노원구, 은평구, 강동구, 동대문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관악구, 마포구, 종로구, 동작구, 강남구</li> <li>○ 2019년 민간위탁형 전환예정 자치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체형 ⇒ 민간위탁형 : 영등포구, 용산구, 광진구, 강북구, 중랑구</li> <li>- 직영형 ⇒ 민간위탁형 : 서대문구</li> </ul> </li> <li>○ 단체형 : 중구, 서초구, 송파구</li> </ul>
---

## 6. 법적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24조  
(사무의 위임등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  
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 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안내」 서울특별시  
지역공동체담당관-12736(2018.11.28)호